

제2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재정기획관실

《 순 서 》

☐ 일반현황	1
☐ 201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10
☐ 2016주요업무 추진계획	18
○ 2016년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	19
○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20
○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	21
○ 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	22
○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23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	24
○ 지방소득세의 체계적 운영	25
○ 공정한 시민중심 구제업무 운영	26
○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강화	27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	28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29
○ 리스·렌트 세수증대로 재정 안정화 기여	30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31
○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세액 공제	32
○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	33
○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34
○ 공유재산 실태조사	35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16. 1. 1. 현재)

1 기 구

□ 6담당관 24담당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5담당(23명)	4담당(18명)	5담당(26명)	4담당(28명)	3담당(20명)	3담당(22명)
재정기획팀 편성총괄팀 문화복지예산팀 산업경제예산팀 건설교통예산팀	재정지원팀 부채리스크관리팀 공기업관리팀 출자출연관리팀	세정팀 지방소득세팀 심사과표팀 세무지도팀 세외수입총괄팀	징수관리팀 체납정리팀 영치운영팀 기업민원팀	계약팀 지출팀 결산팀	재산운영1팀 재산운영2팀 차량지원팀

2 정 · 현원

□ 정원 143명/ 현원 137명

구 분	총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계	143/137	1/0	6/7	24/24	57/54	48/44	7/8
예산담당관실	23/23	1/0	1/2	5/5	10/8	6/7	0/1
재정관리담당관실	18/18	0/0	1/1	4/4	8/8	5/5	0/0
세정담당관실	30/26	0/0	1/1	5/5	12/9	11/10	1/1
납세협력담당관	32/28	0/0	1/1	4/4	14/14	11/8	2/1
회계담당관실	19/20	0/0	1/1	3/3	9/8	5/7	1/1
재산관리담당관	21/22	0/0	1/1	3/3	4/7	10/7	3/4

2

예산 규모

□ 예 산 (市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16년 당초예산		'15년 최종예산	'15년 당초예산	
		예 산 액	증 감 륜(%)			
			'15년 최종대비			'15년 당초대비
합 계		81,902	△11.1	5.5	92,094	77,646
일 반 회 계		58,573	△4.5	17.7	61,310	49,774
특 별 회 계		23,329	△24.2	△16.3	30,784	27,872
	공 기 업	11,879	△19.4	△10.0	14,739	13,195
	기 타	11,450	△28.6	△22.0	16,045	14,677

□ 기 금 : 통합관리기금 등 14개 기금 3,414억원

□ 채 무 : 3조 1,983억원('15년 12월 말 추정치)

□ 예 산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5년	내 역		
			인건비	물건비	사업예산
계	12,151	6,638	-	47	12,104
예 산 담 당 관 실	935	799	-	7	928
재정관리담당관실	10,483	5,356	-	16	10,467
세 정 담 당 관 실	708	463	-	2	706
납세협력담당관	9	8	-	7	2
회 계 담 당 관 실	1	1	-	1	0
재산관리담당관실	15	11		14	1

□ 2016년 지방세 징수목표('15, '16년 비교)

(본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16년 본예산					'15년 최종예산	'15년 본예산
	예 산 액	전년대비					
		'15년 최종예산		'15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581	122	0.4	2,916	10.9	29,459	26,665
취 득 세	12,669	427	3.5	2,980	30.8	12,242	9,689
등 록 면 허 세	34	1	3	2	6.3	33	32
주 민 세	175	△3	△1.7	30	20.7	178	145
자 동 차 세	3,982	7	0.2	35	0.9	3,975	3,947
레 저 세	187	△18	△8.8	△11	△5.6	205	198
담 배 소 비 세	1,685	△18	△1.1	△145	△7.9	1,703	1,830
지 방 소 비 세	2,552	△261	△9.3	△136	△5.1	2,813	2,688
지 방 소 득 세	4,054	△84	△2	620	18.1	4,138	3,434
지역자원시설세	860	13	1.5	△259	△23.1	847	1,119
지 방 교 육 세	3,105	32	1.0	129	4.3	3,073	2,976
과 년 도	278	26	10.3	△329	△54.2	252	607

3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단위 : 명 / 억원)

구분	기 관 명	설립일자 (통합일)	조 직	정원 (현원)	2016년 예산	감독부서
공 사 공 단	도 시 공 사	'03.03.31 (11.12.28)	1감사 1실 2본부 11처 35팀	378 (299)	34,796	재정관리담당관
	교 통 공 사	'98.04.15 (11.12.28)	1감사 3본부 6처 1단 1실 9사업소 47팀	1,267 (1,159)	3,115	광역교통정책관
	관 광 공 사	'15.09.04	1실 1본부 4처 12팀	96 (96)	228	관광진흥과
	시 설 관 리 공 단	'02.03.25	3본부 4실 7사업단 4관	319 (291)	768	재정관리담당관
	환 경 공 단	'07.01.19	1실 2본부 (7팀) 8사업소	427 (408)	919	환경정책과
출 자 출 연	인 천 의 료 원	'85.07.01	1분원, 1부설 연구소, 1센터, 1단, 5부, 20진료과, 6과, 12실	455 (477)	606	보건정책과
	인 천 구 발 전 원	'95.08.18	2본부 4실 3센터 1지원단	62 (44)	77	정책기획관
	경제통상진흥원	'96.06.25	3본부 1부 1실 5팀	53 (48)	277	산업진흥과
	신 용 보 증 재 단	'98.01.20	2본부 1실 2부 1단 1센터 6지점	59 (56)	337	생활경제과
	인천테크노파크	'98.06.18	2본부 4실 4센터	54 (51)	484	경제정책과
	정보산업진흥원	'02.12.13	1실 2본부 1연구소 1단	49 (45)	499	경제정책과
	인천종합에너지	'04.06.10	2본부 7팀	72 (69)	1,340	에너지정책과
	인 천 문 화 재 단	'04.12.10	2본부 7팀 2관	84 (67)	57	문화예술과
	인천글로벌캠퍼스 운 영 재 단	'12.02.21	2팀	23 (20)	378	경제청 기초서비스산업유치과
	인천유시티(주)	'12.05.24	3본부 1단 5팀	23 (23)	153	경제청 U-City과
	여 성 가 족 재 단	'12.11.27	1실 2부, 수탁기관 2	27 (26)	28	여성정책과
	강화고려역사재단	'13.07.05	1국 3팀	9 (9)	6	문화재과
	인천인재육성재단	'85.01.07	1국 1원	9 (8)	30	교육지원담당관
	(주)인천투자펀드	'13.10.07	미구성	4 (4)	0.6	경제청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

4

공유재산 및 물품, 차량 현황

□ 공유재산 기본현황

(단위 : 천 m², 백만원)

구 분	합 계			토 지			건 물		
	필지(동)	면적	재산가액	필지	면적	재산가액	동수	면적	재산가액
계	33,357	62,683	28,113,769	32,431	60,183	24,946,890	926	2,500	3,166,879
행정재산	31,003	55,828	22,692,930	30,132	53,422	19,564,430	871	2,406	3,128,500
일반재산	2,354	6,855	5,420,839	2,299	6,761	5,382,460	55	94	38,379

❖ 국유재산 기본현황

(단위 : 천 m², 백만원)

구 분	필지수	면 적	금 액	비 고
행정재산	14	3.3	1,114	행정자치부

[2015년도 공시지가적용]

□ 공유재산 매각실적

(단위 : m², 백만원)

년도 별	총 계			일반 매각			손실보상 매각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필지	면적	금액
계	49	68,327	46,167	29	63,795	42,348	25	4,532	4,319
2013년	14	48,177	3,632	6	47,243	3,031	8	934	601
2014년	14	3,540	5,346	6	1,047	2,716	8	2493	2,630
2015년	21	16,610	37,189	17	15,505	36,601	9	1,105	1,088

□ 물품 현황

(단위 :천점, 억원)

구 분	전체 물품		정수물품		일반물품	
	수 량	가 액	수 량	가 액	수 량	가 액
계	169	2,477	3	405	166	2,072

□ 공용차량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816	151	81	121	463
시 본 청	77	48	25	4	0
사 업 소	579	100	56	113	310
위탁기관	160	3	0	4	153

5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립일자)	구 성			위원장	기 능	비고
		계	당연	위촉			
지방재정계회 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제33조 (‘92. 4. 1.)	15	4	11	경제부시장	-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예담당관실
학술옹역심의회 위원회	인천광역시 학술옹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9. 5.4.)	20	5	15	기획조정 장	- 옹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옹역사업계획·과업내용·수행 기간·옹역비 등의 적정성	예담당관실
예산성위 과금회	지방재정법 제48조 인천광역시 예산 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02. 7.22.)	10	6	4	행정부시장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지급 대상 및 지급 규모 심의	예담당관실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00. 9.25.)	9	6	3	경제부시장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 기금운용 성과 분석 등)	예담당관실
주민참여예 사회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13.7.25.)	98	-	98	민간	-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 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예담당관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15. 4. 1.)	15	3	12	민간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들 심의	예담당관실
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14.5.28.)	13	3	10	민간	- 재정영향평가 심사 - 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재정관리 담당관실
출자·출연기 관운영심 의회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14.9.25.)	14	3	11	경제부시장	-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타당성 심의 -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심의	재정관리 담당관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76. 1.)	25	2	23	민간	- 지방세 이의신청 등 심의	세담당관실
기부금 부사 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96. 8. 1.)	10	8	2	시장	- 기부금품 모집 심사	세담당관실
세공 위	인천광역시 징수포 상금 지급조례 제4조 (‘03.4.)	5	5	-	재정기획관	- 징수포상금 지급 심사	납세협력 담당관
계약 심의 위원회	인천광역시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06.4.21.)	11	1	10	재정기획관	- 부정당업자 제재 -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특정인과의 계약 등 심의	회담당관실
공유 재 산 의 심 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인천광역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5조 (‘15.10.5.)	11	4	7	경제부시장	- 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 법 제24조 또는 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	회담당관실

재정건전화 달성을 통한 인천시민 행복시대 실현

예산담당관실	▶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및 달성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 실무부서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예산편성
재정관리담당관실	▶ 정부지원금(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확충 ▶ 일반(특별)조정교부금 운영 등 ▶ 중장기 부채관리 및 재정리스크 관리로 재정 운용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 지방공기업 경영정상화 실현 ▶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세정담당관실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 ▶ 지방소득세의 체계적 운영 ▶ 공정한 시민중심 구제업무 운영 ▶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강화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
납세협력담당관실	▶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자주세원 확충 ▶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 통합영치를 통한 효율적 체납정리 및 납세편의 제공 ▶ 리스 및 렌트 자동차 유치사업 강화
회계담당관실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업무 추진 ▶ 부가가치세 공제대상항목 관리 ▶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
재산관리담당관실	▶ 재확충을 위한 적극적·능동적 재산정책 추진 ▶ 최적 활용 도모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 공정하고 투명한 물품 관리 ▶ 공용차량의 안정적 관리 및 업무 지원

- 2015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 처리현황

처리구분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계	종결	진행	불가	
계	6	6	1	5		
시정요구	1	1	1			
처리요구	2	2		2		
건의	3	3		3		

☐ 총괄목록

관리번호	처리구분	제 목	주관부서		조치 상황
			실·국	과	
15-1	시정요구	중구청 특별교부세 13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	재정기획관실	재정관리 담당관실	종결
15-2	처리요구	출자출연기관들의 기관별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재정기획관실	재정관리 담당관실	진행
15-3	처리요구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 바람	재정기획관실	재정관리 담당관실	진행
15-4	건의사항	리스 기업 본사 유치를 통한 세수확충 방안 강구	재정기획관실	납세협력 담당관실	진행
15-5	건의사항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선임 시 인천지역 인재 활용	재정기획관실	회계담당관실	진행
15-6	건의사항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	재정기획관실	납세협력 담당관실	진행

☐ 처리계획

관리번호	구 분	위원회명	관리부서	처리결과	비 고										
15-1	시정요구	기획행정	재정관리담당관실	종결											
제 목	시 감사지적, 중구청 부당교부금 13억원 환수 조치														
지적 및 건의사항	감사관실에서 중구청 부당교부금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사항은 지난해에 이어 반복 지적된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에 대한 환수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기 바람														
추진사항															
☐ 감사관실 요청사항 ○ 요청일시 : 2015. 10. 26. ○ 요청내용 - 2013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중구 부당교부금 13억원에 대해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감액 요청 〈 특별교부금 부당집행 미조치 내역 〉 (단위 : 백만원) <table><tr><th>연 도</th><th>기 관</th><th>사 업 명</th><th>감사 지적사항</th><th>반납 금액</th></tr><tr><td>2013년</td><td>중구</td><td>문화체험박물관 조성 사업</td><td>특별조정교부금 목적외 사용 및 목적변경에 따른 미승인</td><td>1,300</td></tr></table>						연 도	기 관	사 업 명	감사 지적사항	반납 금액	2013년	중구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목적외 사용 및 목적변경에 따른 미승인	1,300
연 도	기 관	사 업 명	감사 지적사항	반납 금액											
2013년	중구	문화체험박물관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목적외 사용 및 목적변경에 따른 미승인	1,300											
☐ 처리결과 ○ 지적사항(부당교부금 반납)에 대한 조치계획 통보 : 2015. 11. 26.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반납)가 2015.12.31.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감액할 계획임을 통보 ○ 조정교부금 감액결정 통보 : 2015. 12. 31. - 2016년도 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결과 통보시 반영(13억원 감액)															

관리번호	구 분	위원회명	관리부서	처리결과	비 고
15-2	처리요구	기획행정	재정관리담당관실	진행	
제 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관련 경영개선 방안 강구				
지 적 및 건의사항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 이행조치 지적건수가 늘거나 중복지적이 재발되고 있어 기관별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사항	☐ 사업개요 ○ 경영평가 대상 : 11개 기관 - 평가제외 : 3개 기관(구성원 10인미만, 최근3년 평균 10억미만 지원 기관) (인재육성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 인천투자펀드(주)) ○ 평가시기 : 2016. 3 ~ 7월 ○ 평가내용 : 100점 만점을 기준, 영역별로 평가(절대평가) - 기관평가 : 경영성과(60), 경영시스템(30), 리더십·전략(10) ○ 평가결과 조치 - 우수·부진기관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u>경영개선 권고</u> ○ 소요예산 : 67,000천원 ☐ 추진계획 ○ 경영평가 추진 - 2016년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2 ~ 3월 - 경영평가 시행 : 3 ~ 7월 ○ 기관별 경영개선 방안 수립 - 경영평가관련 지적사항 방지를 위한 경영개선방안 수립 : 2 ~ 3월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방안 통지, 시 → 기관) - 기관별 경영개선방안 수립 시행 : 3월 ~ ☐ 기대효과 ○ 출자·출연기관 운영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 ○ 경영혁신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고				

관리번호	구 분	위원회명	관리부서	처리결과	비 고
15-3	처리요구	기획행정	재정관리담당관실	진행	
제 목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				
지 적 및 건의사항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기초수요 인건비 산정방식의 개선과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 지자체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 바람				
추진사항					

□ 보통교부세 개요

- 재원의 성격 : 일반재원으로서 사용목적은 지자체의 자주적인 판단
- 산정방법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

$$\begin{array}{ccccc}
 \boxed{\text{기준재정수요액}} & - & \boxed{\text{기준재정수입액}} & = & \boxed{\text{재정부족액}} \rightleftharpoons \boxed{\text{보통교부세}} \\
 \text{(4개 측정항목 · 16개 세항목별)} & & \text{(보통세의 80\%의)} & & \uparrow \\
 \text{기초수요 + 보정수요 ± 자체노력)} & & \text{기초수입 + 보정수입 ± 자체노력)} & & \text{조정을 적용}
 \end{array}$$

※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특·광역시에 일괄 교부

□ 추진계획

-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행자부 지속 방문 협의
 - 산정방식 및 유리한 수요 통계 발굴 반영 협의
- 제도개선 건의
 - ① 기초수요 인건비 산정방식 개선 ⇨ '17년 반영 요구
 - ② 소송 진행중인 지방세의 증가산금은 산정 제외 ⇨ '17년 반영 요구
- 기초 통계 실무 TF 운영 : 연 중
 - 행정구역 면적 등 54종 118개 통계 전수 조사 실시

□ 기대효과

- 보통교부세 확충을 통한 핵심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구조 개선

관리번호	구 분	위원회명	관리부서	처리결과	비 고																														
15-4	건의사항	기획행정	납세협력 담당관실	진행																															
제 목	리스 기업 본사유치를 통한 세수 확충 방안 강구																																		
지 적 및 건의사항	리스 차량 뿐만 아니라 기업 본사 유치에도 집중하여 세수를 확충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추진사항	☐ 사업개요 ○ 리스·렌트 차량유치 세수확보 실적 2015.12.31.현재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th>2014</th><th>2015</th><th colspan="2">증 가</th></tr> <tr> <th colspan="2"></th><th></th><th></th><th>금 액</th><th>증가율</th></tr> </thead> <tbody> <tr> <td colspan="2">합 계</td><td>2,144</td><td>2,737</td><td>593</td><td>27.7%</td></tr> <tr> <td>리스</td><td>취 득 세</td><td>1,787</td><td>2,235</td><td>448</td><td>25.1%</td></tr> <tr> <td>렌트</td><td>자동차세</td><td>357</td><td>502</td><td>145</td><td>40.6%</td></tr> </tbody> </table> ○ 그간의 추진사항 - 기업방문 설명회 및 간담회(월 2~6회), 차량유치 현장 방문(주 1~2회) - 공격적 신규 등록 기업유치 및 전국 최상의 차량등록서비스 제공 - 타 시·도 채권면제 동향에 적시 대응(재정관리 부서와 공조 조례개정 완료) - 리스차량 행정소송 적극대응을 통한 1심 승소(4건 221억원 중 2건 207억원) ☐ 추진계획 ○ 타 시·도 등록 중인 리스·렌트 기업 지점 우선 유치 - 리스·렌트 기업 중 우리시 미등록 기업(12개) 관내 지점 설치 유도 ○ 리스·렌트 차량등록 협약기업 등 본사 유치 추진(장기) - 우리시 리스·렌트 협약기업(15개) 중심 기업 본사 적극 유치 ☐ 기대효과 ○ 관내 본·지점 설치 및 등록에 따른 지방세수 추가 확보					구 분		2014	2015	증 가						금 액	증가율	합 계		2,144	2,737	593	27.7%	리스	취 득 세	1,787	2,235	448	25.1%	렌트	자동차세	357	502	145	40.6%
구 분		2014	2015	증 가																															
				금 액	증가율																														
합 계		2,144	2,737	593	27.7%																														
리스	취 득 세	1,787	2,235	448	25.1%																														
렌트	자동차세	357	502	145	40.6%																														

관리번호	구 분	위원회명	관리부서	처리결과	비 고
15-5	건의사항	기획행정	회계담당관실	진행	
제 목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선임 시 인천지역 인재 활용				
지 적 및 건의사항	인천 소속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을 선임시 인천 출신을 위촉하기 바람				
추진사항					

☐ 개요

○ 재정분야에 대한 상시 자문시스템 도입

- 인천광역시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위촉·운영

구 분	성명	소 속	위촉일	임기
고문 공인회계사	송인수 (64.12.26.)	인덕회계법인공인회계사 (인천 계양구)	2014. 3. 1	2014. 3. 1 ~ 2016. 2.29
	정인수 (73. 1. 9.)	정인수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경기도 부천시)		
고문 세무사	서현수 (50. 2.20.)	한국세무사회 세무법인 우경 회장 (서울 서초구)		

※ 근거 : 인천광역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조례(2013.5.27.제정)

- 인천시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및 출자·출연하는 기관, 개인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추진계획

○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위촉 추진

- 2016. 2월 임기만료에 따른 고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선임 시 인천 출신으로 위촉 추진

☐ 기대효과

- 인천 중심의 인재 운영 및 지역 현안사항의 빠른 이해와 자문으로 지역발전과 애향심 고취

관리번호	구 분	위원회명	관리부서	처리결과	비 고
15-6	건의사항	기획행정	납세협력 담당관실	진행	
제 목	지방세 과오납(공무원 과실)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				
지 적 및 건의사항	공무원의 과실로 지방세 과오납분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바,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최소화 하기 바람				
추진사항					

☐ 사업개요

- 시세(과년도) 사유별 과오납 현황 (2015 행감자료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과 오 납 사 유	건 수	금 액	비 율(%)	비 고
계	22,406	57,402	100	
과세관청 착오부과	1,087	381	0.7	
국세경정, 연말정산, 자동차 징수촉탁	7,932	8,074	14.0	
기타(착오납부, 불복청구, 경정신고 등)	13,387	48,947	85.3	

※ 기타 사유의 비중이 높은 것은 6·8 공구 환급액(300억원) 등 경정신고에 의한 환급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추진계획

-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 시 기 : 2016. 1월, 7월 상·하반기 2회 실시

* 군·구는 자체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 주요내용

- 지방세 부과 전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통한 과세자료 현행화
 - * 법원(사망자 등기정보), 국토부(자동차, 부동산정보), 국세청(소득세 과세정보 등)
- 지방세 해석사례 등 법규해석사례 숙지로 정확한 과세 유도
- 각종 세무담당 회의 시 과오납 최소화를 위한 교육 병행 실시

☐ 기대효과

- 과세관청 착오로 인한 과오납 최소화로 지방세정 신뢰성 제고

2016주요업무 추진계획

2016년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

- ❖ 2016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하여 2018년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고자 함

□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적극 추진

-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실천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점검에 더하여 신규과제 지속발굴
⇒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 교두보 마련
- 전략적 자원 운용 및 세원확대 : 4대 분야 10대 과제
 - 세입확충 : 지방세·세외수입 확충, 이전자원 관리 강화
 - 세출관리 : 유사·중복사업의 지속 발굴 및 투자심사 재실시, 비법정 보조금 및 국제분담금 개선 등
 - 재정운영 : 재정관리제도 엄격운영, 복지 효율화 지속추진
 - 공공기관 혁신 : 인천도시공사 부채감축, 기타 공기관 혁신

□ 예산편성 원칙 강화 : 법정·의무적 경비 전액 반영

- 군·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시세 징수교부금 등 해소
-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군·구, 교육청의 재정협력 체계 강화
- 과거 예산 배정유보를 통한 세출절감 방식에서 벗어나 기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 예산배정하여 사업부서 지원강화

□ 지속적 세출 구조조정 추진 및 이해당사자와의 소통강화

-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추진하되 시민사회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더하여 필요시 재정부서에서도 소통 강화
-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무원 동참분위기 확산과 노조와의 협력 강화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 ❖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국비 선별적 확보(시비매칭 최소화) 및 재정투자 효율화가 높은 분야의 국비 지속 확보
- ❖ 교부세 지속 확충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 도모

☐ 2017년도 목표액 : 2조 4,675억원(교부세 별도)

- 국 비 : 2조 4,675억원(국고보조 20,675억원, 국가직접 4,000억원)
 - (2016년) 2조 4,520억원 / (2015년) 2조 853억원 / (2014년) 2조 213억원
- 지방교부세 : 전년도 교부액 수준이상 될 수 있도록 노력
 - (2016년) 3,981억원 / (2015년) 4,307억원

☐ 국비 확보

- 핵심 국비사업 선별적 확보 및 집중 유치 활동 전개
 - 시민 직접수혜 사업, 가치재창조 및 미래성장 동력사업 등 중점 확보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시비매칭 최소화
- 국비확보팀 운영
 - 국비확보 논리 개발, 유치 활동, 동향 파악 및 여·야·정 협의체(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적극 활용 등

☐ 지방교부세 확충

- 제도개선사항의 지속적 발굴로 중앙부처와 수시 협의
- 정확한 통계 자료의 체계적 관리
 - 누락된 통계로 인해 보통교부세 불이익 방지를 위한 통계 관리 협업 시스템 구축 등 (※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등 54종 118개 통계)

☐ 기대효과

-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 최소화 및 보통교부세 확충을 통한 재정구조 개선으로 건전재정 기반 구축
- 정부지원금 확충에 따른 시민 행정서비스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

- ❖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통합부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립
- ❖ 우발부채, 재정부담협약 등 재정 리스크 요인 선제적 관리

☐ 사업개요

○ 통합부채 및 지방채 관리

- 시 본청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통합부채 현황 관리
- 지방채 발행·상환·차환 등 총괄관리

○ 재정리스크 요인 총괄 관리

- 우발부채 등 재정 리스크 요인의 종합적 관리 및 대응
- 재정투자심사 강화로 시기·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 추진계획

○ 통합부채 감축방안 마련 및 채무비율 관리 강화

- 통합부채 보고서 작성 및 재정건전화계획 추진현황 관리
- 공사공단 부채감축 계획 관리 및 추진현황 관리감독

○ 장기 재정부담요인의 철저한 관리

- 우발부채, 각종 재정부담 협약 등 리스크 요인관리 내실화

○ 재정투자사업 사전·사후 관리 강화

- 재정투자사업의 시기조정, 사업비 조정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 재정투자심사 위원회 사전심의 내실화

☐ 기대효과

○ 향후 재정 운영의 예측성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비율 25%이하 실현

공기업 경영정상화 지속 추진

- ❖ 도시공사 핵심사업 추진 및 부채감축계획 이행 지속 관리
- ❖ 공기업 평가 및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 사업개요

- 도시공사 핵심사업 및 부채감축계획 이행 지속 추진
 - 핵심사업 정상 추진과 성공적인 자산매각·분양 회수를 통한 부채감축
 - 감축목표 부채율 : (2016년) 238%, (2017년) 230% ※ (2015년) 251% 달성
- 공기업 지도 감독을 통한 효율적 운영 도모
 - 산하 공기업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 추진계획

- 市 차원의 도시공사 경영정상화 지원
 - 부채감축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 추진회의 실시(매주) 등 총괄 지도 감독
 - ‘도시공사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市 출자 지원’
 - 출자액 9,000억원(‘14년 실적 2,427억원, ’16년~’17년 6,573억원)
- 공기업 평가 및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 효율화 도모
 - 산하 공기업 평가 및 지속적 지도감독을 통한 운영 효율화
-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에 따른 관리 강화
 - ‘15년도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과 ’16년 성공적 시행을 위한 총괄 관리

□ 기대효과

-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통한 공기업 재정건전화 및 운영 효율화

출자 · 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 ❖ 출자 · 출연기관의 경영 혁신을 통해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한 시민 신뢰도 향상

□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 경영 지원

-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실시
 - 기관의 규모별·유형별 경영평가 모델 개발, 기관장 성과중심 목표 부여
 -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출자기관 3, 출연기관 11)
 - 경영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조치, 임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등으로 활용
- 상생발전을 위한 임금피크제 시행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16년 시행 (인천의료원)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 '17년 시행 (13개 기관)
 - ※ 인천의료원 '16년 신규채용 예정인원 (6명)
- 출자·출연기관별 조직 · 인력 운영 및 경영상태 등 공시
 - 임직원 현황,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내 · 외부 감사결과 등
 - 기관별 홈페이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재정고) 활용

□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합리적 조직 · 인사 운영
 - 성과연봉제 등 능력과 성과중심의 급여체계 확립(11개 출연기관)
- 재정건전화를 위한 총 인건비제 운영
 - 모든 출연기관(11개) 총 인건비제 실시 ⇒ 적정수준 인상을 관리
- CEO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평가시스템 고도화
 - 시정방향과 연계된 핵심과제 중심 경영성과 목표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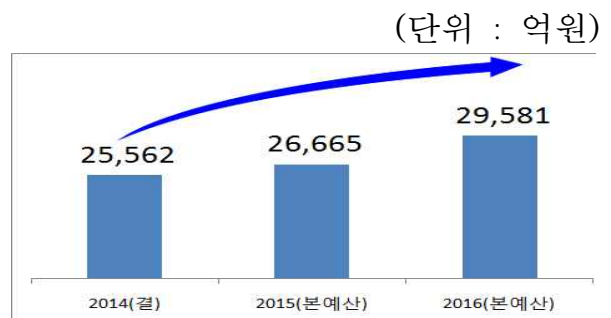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

- ❖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화 도모

□ 2016 세입목표 및 세수여건

○ 2016 세입목표

'14결산	'15예산		'16본예산
25,562	본예산	26,665	29,581
	1회추경	27,532	
	최 종	29,459	



○ 세수여건

- 주식 및 주택시장 지표개선 등 소비심리가 회복세에는 있으나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금리인상 가능성, 기업심리 위축에 따른 체감경기 악화 등 부정적 영향 가능성 상존

□ 추진계획

○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 강화

- 지역특성 극복을 위한 징수율 1% 올리기 추진('16년 98.0%)
- 징수율 저감요인 차단을 위한 군·구 징수보고회 개최 : 4월, 9월
- 군·구별 발전적 경쟁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평가 및 평가지표 개선 : 5월

○ 기획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강화

○ 납세자 중심의 납부편의 시책 추진

- 전자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 운영
-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납부시간 연장('15.12.21.부터) : 22:00 → 23:30

○ (주)DCRE 행정소송 승소 노력 강화

- 2015. 10. 14. : 항소심 제3차 변론 종결
- 2015. 12. 07. : 항소심 판결 선고 연기

※ 행정소송 승소를 위하여 서울고검, 국세청과 상시 공조체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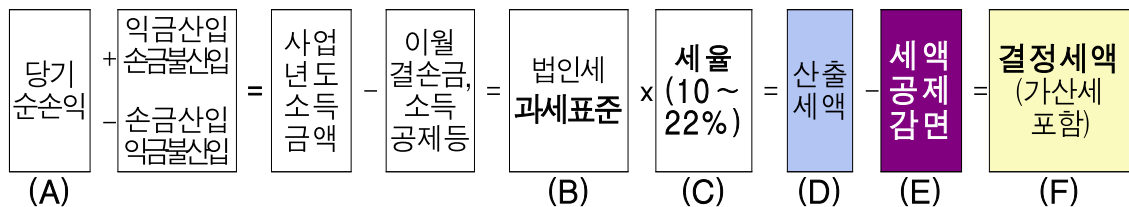
지방소득세의 체계적 운영

- ❖ 변화하는 지방소득세정 환경에 선제적·체계적 대비로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확보를 통한 재정건전화 기여

□ 추진개요

- 국세(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2015년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신고체제로 개편

〈지방소득세 과세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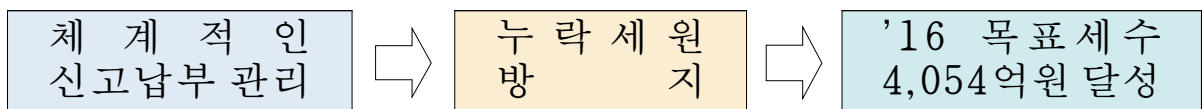


- * 종전(국세 부가세 형식) : 국세 결정세액(F) × 10% = 지방소득세
- * 현행(독립세 전환) : 국세 과세표준(B) × 독립세율 (1~2.2%) - 공제·감면 (현행 특례 없음) = 지방소득세

- '16년부터 법인의 특별징수 정산제도 적정 운영

□ 추진계획

- 효율적인 세원관리



-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 연찬 : 2월, 8월
- 신고율 제고를 위한 관내 법인 및 유관기관 등 홍보 : 3월
- 특별징수 정산제도 도입을 통한 정확한 정산 수행 : 5월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사후검증 및 적정성 검토 : 6월~8월
- * 기한후 신고법인 안내 및 관내외 본점법인 안분내역 조사

-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소득세 체납관리 강화

- 월별·세원별 중점 정리대상 체납자 선정 및 관리 : 매월
- 징수율 부진기관 지도점검 : 10월

공정한 시민중심 구제업무 운영

-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의사표시에 대한 시민중심의 구제업무 운영으로 조세행정의 신뢰성 제고

□ 개 요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 추진실적

- 201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18회(위원회 개최 15회, 서면심의 3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심사청구

(단위 : 건, %)

과세전 적부심사	합계(A)	채택(B)	일부채택(C)	불채택	심사제외 (취하포함)	인용율(% (B+C)/A)
	40	10	3	22	5	32.5
이의신청· 심사청구	합계(A)	경정(B)	취소(C)	기각	각하 (취하포함)	인용율(% (B+C)/A)
	54	2	6	43	3	14.8

□ 추진계획

○ 지방세 구제제도 실무 교육 실시(연2회)

-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업무 처리능력 지원(시→군구)

○ 납세자의 권리보호 중심의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 불복청구 분야별 전문심의위원 선정운영,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견진술 기회 확대

○ 부실과세 사전예방을 위한 심의사례 군·구 전파

- 주요 불복사례의 원인을 분석·전파하여 부실과세를 사전예방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강화

- ❖ 법인 세무조사 및 기획조사 등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세수확보 체계 구축 ⇒ 누락세원 발굴, 성실납세 유도, 조세정의 실현

□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세원발굴 기능 정상화를 통한 다각적 세수확보 체계 구축
- 중점 조사사항 및 추진과제
 - 시기별 중점 추진과제 선정으로 집중적·체계적 조사 실시
 - 비과세·감면 및 누락의심 분야 등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 20억원 이상 고액 취득법인에 대한 법인 세무조사
 - 행자부 선정 전국 공통과제에 대한 과제별 세무조사

□ 세무조사 실적 및 목표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법 인 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취약분야 등)		과제별 세무조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실적	17,281	277	596	88	12,031	138	4,654	51
'16.목표	-	450	-	180	-	170	-	100

□ 추진계획

구 분	대 상	방 법	조사기간
법인세무조사	'14~'15 20억 이상 고액 취득법인	서면조사 원칙 (방문조사 병행)	연중
기획세무조사	비과세·감면·중과세율 적용 등 적정여부 조사		
과제별세무조사	행자부 선정 전국 공통과제 조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 강화

- ❖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 시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도모

☐ 추진개요

○ 시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현황

(단위 : 억원)

'16년 목표액	3개년 징수액			비 고
	'15.11월	'14년	'13년	
7,172 (714)	8,669 (667)	3,444 (646)	10,070 (742)	() 경상적 세외수입

* '15년 송도6-8공구 토지매각대금 5,864억원, '13년 인천터미널 매각수입 7,034억원

☐ 추진계획

○ 2016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반 구축

-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일정별·단계별 체계적인 체납정리 추진
- 체납자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및 각종 채권 압류자료 지원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연2회, 4개월

○ 세외수입 전담조직 신설 추진 및 운영

- 분산 관리하던 체납액을 세정부서에서 일원화하여 통합·집중관리
-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체계 구축으로 전문성·효율성 증대 => 징수율 제고

○ 시 공공시설 사용료 등 현실화 추진방안

- * 체육시설, 도매시장, 수련관, 회관, 복지관, 박물관 등
- 사용료 등 요율 전수조사 및 경영수지 분석(26개 부서)
-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 결과에 의한 추진방안 마련 및 시행

☐ 기대효과

- 다양한 채권확보와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확충방안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세외수입 증대 도모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역량 강화

- ❖ 체납 징수 행정력 집중 및 자료 확보·공유를 통한 체납정리 강화
- ❖ 실태 조사 강화 및 은닉재산 추적 등 현장 중심의 체납처분 실시

□ 체납액 정리 목표

(단위:억원, %)

구 분	이월 체납액 전망(A)	정 리 목 표 액(B)	정리율 (B/A)	비 고
과 년 도 목 표 액	1,762 (3,874)	600	34.1 (15.5)	(주)DCRE 제외 (16.1월 : 2,112)

※ 괄호안 (주)DCRE 체납액 포함, 정리 목표액 : 징수 400억원, 결손 200억원

□ 추진계획

- 체납원인 유형별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 체납기간·금액·납부이력 등 체납자 유형별 관리를 통한 체납정리 추진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강화
 - 현지실태조사 4개반 편성, 주소지·사업장 등 현지출장 강화
 - 적극적인 재산 압류·공매·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실시
 - 해외송금 및 금융거래내역 중점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추적 및 형사고발
 -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병행
 -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 추진
- 체납차량(지방세·세외수입) 통합영치 활동 강화
 - 군·구 및 유관기관(경찰청, 한국도로공사)과의 협업·공조체계 강화

□ 기대효과

- 체납관리체계의 효율화로 징수실적 제고 및 세수증대 기여
- 현장활동 강화 및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한 체납정리 업무 효율화

리스·렌트 세수증대로 재정 안정화 기여

- ❖ 기업편의 최상의 등록환경 구축 및 지속적 세수증대 기반 마련
- ❖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탄력적 차량유치 및 등록기업 이탈방지 집중

□ 등록유치 세수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리 스	렌 트	비 고
취득·자동차세	3,100	2,347	753	

〈그동안 세수실적〉

(단위:억원)

2011	2012	전년비	2013	전년비	2014	전년비	2015	전년비	비 고
305	862	557 ↑ (182.6%)	1,480	618 ↑ (71.7%)	2,144	664 ↑ (44.9%)	2,737	593 ↑ (27.7%)	11년 대비 9배 신장

□ 추진계획

- 『인천맞춤형차량등록시스템(In-Cars)』개선 및 기업연동 추진
 - 서류 간소화 및 등록시간 단축, 지속적인 인천등록 유지 효과
- 기존 유치기업 이탈방지 및 신규 등록기업 유치 전략 추진
 - 유치업체 집중관리, 이탈 방지 및 점진적 신규시장 개척 등 탄력적 대응
- 지속적 기업방문 및 홍보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 실천
 - 기업방문 설명회, 수시 간담회 개최 및 기업유치 현장 방문
- 리스차량 채권개정 동향관리 철저 및 행정소송 적극 대응
 - 타 시·도 채권면제 조짐 등에 적기, 적극대응 및 소송 2심 승소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계약에서 대금까지 계약정보 전면공개 확대로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 추진개요

- 계약정보 전면공개(공사, 용역, 물품 구입)
- 계약사무 역량제고를 통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계약추진
 -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계약의 적정성 제고 및 분쟁의 최소화

□ 추진계획

- 계약정보 전면공개 시행
 -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등 계약현황 공개시스템(시 홈페이지) 활용 정보제공
- 계약사무 통합운영으로 전문성 강화
 - 직속기관·사업소의 2억원 이상 공사, 5천만원이상 용역·물품계약
- 하도급 대금 채불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 적극 추진
 - 하도급지킴이·채불임금 신고시스템 및 하도급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회계업무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 회계아카데미 개최(반기 1회), 계약업무 G·S·C 열린샘터운영(분기 1회)
- 지역업체 수주율제고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행
 - 지역업체(80%), 중소기업제품(50%) 및 여성기업제품(5%), 중증장애인제품(1%)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내실화
 - 계약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기대효과

-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대외 신뢰도 제고
- 적극적 계약지원을 통한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세액공제

- ❖ 일부 과세(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 과세사업에 지출 되어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2016년도 매입세액 공제 : 6억

- 과세사업(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등)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자산취득비,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지 않고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분기기준 4회]
 - 제1기(상반기) : 4.25(예정신고), 7.25(확정신고)
 - 제2기(하반기) : 10.25(예정신고), 익년1.25(확정신고)

※ 2015년도 부가가치세 공제 받은 현황

(단위:천 원)

구 분	매출세액(A)	납부세액(B)	공제 받은세액(A-B)	비 고
합 계	1,909,655	1,233,336	676,319	
2014년제2기	993,246	640,215	353,031	1.25 확정신고
2015년제1기	916,409	593,121	323,288	7.25 확정신고

☐ 우리시(본청) 과세사업 주요현황

- 부동산 임대업(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료)
 - 지하도상가, 버스차고지, 민간위탁주차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등
-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관람석 있는 경기장제외)
 -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삼산월드체육관, 열우물경기장, 송림체육관, 도원수영장, 계산국민체육센터, 송도LNG스포츠타운, 송도스포츠파크 등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 추진

- ❖ 완벽한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 및 재정운영 환류
- ❖ 복식부기 회계방식 결산을 통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결산개요

- 근거법령
 - 예산결산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53조의2
 - 재무결산 :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추진기간 : 2016. 1월 ~ 7월
- 추진대상
 - 37개 회계(일반회계 1, 공기업특별회계 4, 기타특별회계 18, 기금 14)
 - 예산결산 :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성인지 결산서 등 작성
 - 재무결산 :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 추진계획

- 결산업무담당자 교육 2016. 1. 13.
-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 용역 2016. 1. ~ 3월
- 결산결과 보고(시장) 2016. 3. 20일한
- 결산검사위원 선임(제230회 임시회) 2016. 3. 3. ~ 3. 15.
- 결산검사 실시 2016. 3. 21. ~ 4. 9.
- 결산 의회 승인(232회 정례회) 2016. 6. 7. ~ 7. 7.
-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행정자치부장관) 2016. 7월
- 결산 승인 보고(행자부) 및 고시(시 홈페이지) .. 2016. 7월
- 결산 고시(시보) 2016. 7월
- 지방재정연감, 통합재정수지분석, 중앙합동작업(행자부) .. 2016. 8. ~ 10월

□ 기대효과

- 결산 결과의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반영
- 재정운영 성과 분석으로 각종 재정관련 계획 수립 시 활용
- 결산 및 재무제표 공개를 통한 시 재정관리의 신뢰성 제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 ❖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른 재산 매각 추진
- ❖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운용 체계 확립

□ 사업개요

○ 재정매각 : 5,497억원(송도8공구, 북항배후부지)

소 재 지	지 목	면적(㎡)	용도지역	매각(예정)가격
송도동 310-1외 2필지	대	197,919.8	공동주택용지 (A2,A5,A6)	4,298억원
원창동 381-7외 17필지	잡	56,366.6	상업용지	1,200억원

○ 일반매각 : 21억원(보존부적합 1000㎡미만, 32필지)

○ 손실보상 : 10억원(도시개발사업 등 기타 매각)

- '15년도 매각 실적 : 372억원(재정매각(286억), 일반매각(76억), 손실보상(10억))

□ 추진계획

○ 재정매각 입찰 공모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 : 2016. 1. 11 ~ 2. 18, 계약체결 : 2016. 2. 29

○ 행정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산관리 운영

-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등 실태조사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축적 운영

• '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3차 변경(취득 5건, 처분 3건)

- 행정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계 규정 등 정비

- 수요자 맞춤형 도시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 추진

○ 경제청, 도시공사 등 관련기관 연계하여 매각 재산 가치 제고

□ 기대효과

○ 공유재산 조기 매각으로 재정 건전화 기반 마련

공유재산 실태조사

❖ 공유재산 정보의 정비 및 분석을 통한 재산관리 인프라 확충 및 최적 활용 도모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 조사개요

기간	대상	주체	방법
2016. 1월 ~ 10월	市 소유 재산(토지)	재산관리부서	공부, 현지조사

※ 공유토지의 토지이동 분 수시 반영에 따라 조사대상 변동 가능

□ 추진계획

○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

- 기간 : 2016. 1월 ~ 6월

- 방법 : 관련 공부 열람 및 현장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 GIS 기반의 ‘공유재산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구축 : 2016. 2월

- 방법 : GIS 기반의 공유재산 DB와 공간정보(항공측량 사진 등) 융합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기간 : 2016. 7월 ~ 10월

- 방법 : 전수조사(공부 대사, 현지조사)

□ 기대효과

○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로 행정 신뢰성·공신력 확보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市 재정확충 방안 마련